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 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 제정안

제1조(「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
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을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별지 12호 및 1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처리
절차 중 “행정안전부”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
자치도”로 하며, 1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중 “시·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성능검사용시설 및 장비 명세서 2. 보유 검사기술인력 및 그 건설기술경력증(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인 또는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나 지점의 소재지 변경	없음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	변경된 대표자나 임원 명단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기술인력의 변경	변경된 기술인력 명단 및 건설기술경력증(실무경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확인서
보유장비의 변경	변경된 계측장비 명세서 및 계측장비에 대한 성능검사서 사본	없음
수 수 료	2만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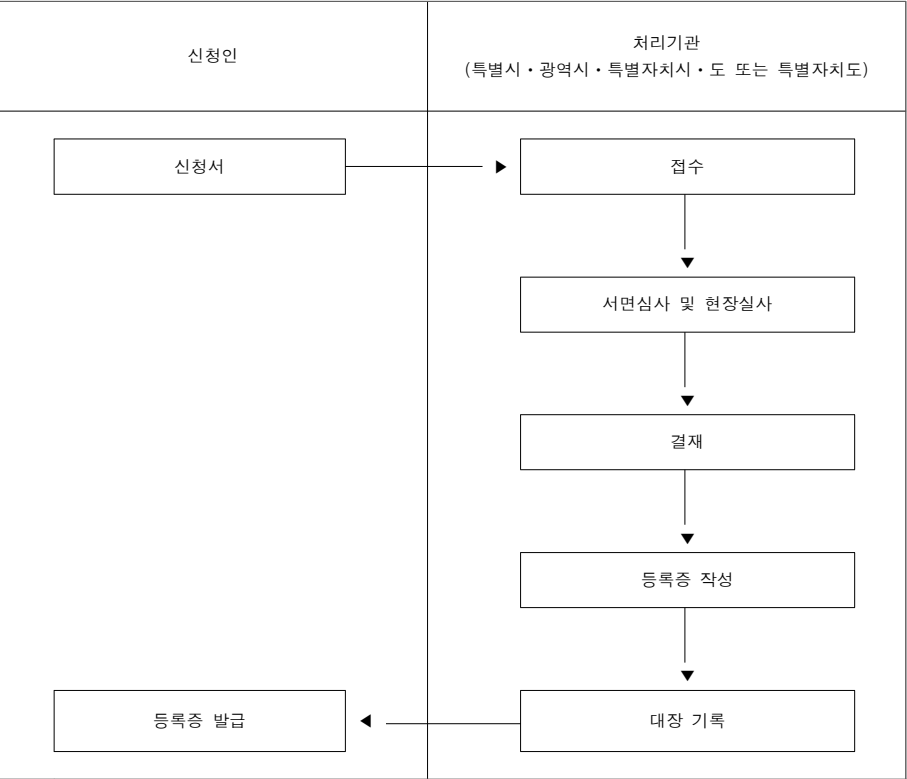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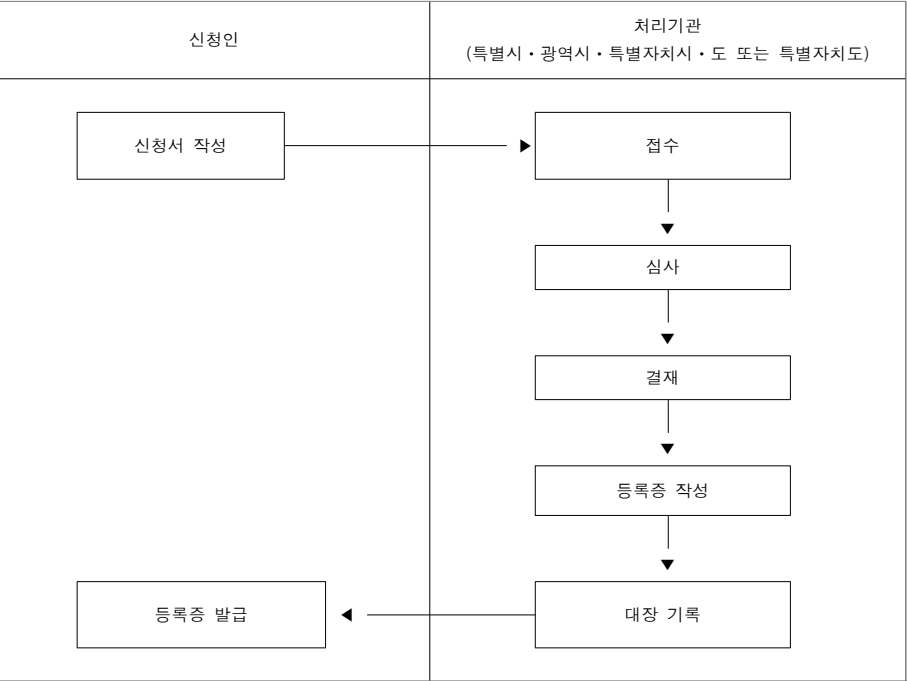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상 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행정안전부장관</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① - ----- ----- ----- ----- ----- ----- -- <u>시·도지사</u>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u>행정안전부장관</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 <u>시·도지사</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u>행정안전부장관</u> 이 성능검사대행자	⑤ ----- <u>시·도지사</u> -----

에게 교부하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 --.
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생략) ② <u>행정안전부장관</u> 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u> 는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0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직접 정기검사를 한 지정검사기관을 말한다)은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 <u>시·도지사</u> 에게 알려야 한다.	제70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 ----- ----- ----- ----- ----- ----- 특별자치 <u>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에게 알려야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연락처	(044) 205 - 3325